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56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 황정아 · 박용갑 · 조승래

한민수 • 박정현 • 장종태

이병진 • 박지원 • 허성무

민형배 · 박희승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원자력시설에 인접하여 방사능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들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및 방재훈련 등의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원이 소요됨에 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 세의 일부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교부되고,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지원에서 제외되어 사각지역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총액의 19.3%로 확대하고, 확대한 0.06% 를 원자력안전교부세로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 자치단체에 교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9조의5 신설 등). 법률 제 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제9조의3, 제9조의4 및 제9조의5"로 한다.

제3조 중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부동산교부세·소방안 전교부세 및 원자력안전교부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1만분의 1,924"를 "1만분의 1,9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제4호의 정산액"을 각각 "제1항제4호의 정산액"을 각각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제6호의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원자력안전교부세: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 + 제1항제4호의 정 산액) × 1만분의 6

제9조의5를 제9조의6으로 하고,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 9조의6(종전의 제9조의5) 중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부 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및 원자력안전교부세"로 한다.

제9조의5(원자력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 중 발전용 원자로 또는 연구용 원자로에 인접함에 따라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원자력안전 강화 노력,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운영 소요 재 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	1				
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u>제9조의3 및 제9조의4</u>	<u>제</u> 9조의3, 제9조의4 및				
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	제9조의5				
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하는 금액을 말한다.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	제3조(교부세의 종류)				
(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					
는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	<u>부동</u>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	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및				
<u>세</u> 로 구분한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1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					
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					
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					
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					
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					
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	<u>1</u>				
<u>만분의 1,924</u> 에 해당하는 금	<u>만분의 1,930</u>				

액

- 2. ~ 6. (생략)
-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u>제1항제4호의 정산액</u>) × 100분의 97
-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u>제1항제4호의 정산액</u>)× 100분의 3
- 3. ~ 5. (생 략)

<신 설>

<신 설>

2. ~ 6. (현행과 같음)
②
1
제1항제4호의 정산액
_ 제6호의 금액
2
제1항제4호의 정산액
_ 제6호의 금액
3. ~ 5. (현행과 같음)
6. 원자력안전교부세: (해당 연
도의 내국세 총액 + 제1항제
<u>4호의 정산액) × 1만분의 6</u>
제9조의5(원자력안전교부세의 교
부) ①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
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
항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 중
발전용 원자로 또는 연구용 원
자로에 인접함에 따라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자
키그세 거에 고브퀴서라 최다
치구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교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u>부동</u> 전 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관한 조치, 이의신청,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3조 및 제15조를, 특별교부세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부세.	의 교	부기준	은	지방지	<u> </u> 치	<u>단</u>
	체의	재정역	<u> 겨건,</u>	원지	-력안	전	<u>강</u>
	화 :	노럭,	방사	선비	상계획]구	역
	<u>운영</u>	소요	재원	등을	는 고리	하	여
	<u>대통</u> i	령령으	로 정	한다	<u>•</u>		
시	9조의	<u> 6</u> (관련	현 규정	형의	군용)	<u>부</u>	동
	산교-	부세,	소방역	안전.	교부서		<u>및</u>
	<u>원자</u>	력안전	교부	<u>네</u>			